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 <개정 2019. 12. 20.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유해화학물질
시약 정보 요약서</td><td>이 요약서는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</td></tr>
<tr><td>판매업 상호(명칭)</td><td colspan="2">하크코리아 유한회사</td></tr>
<tr><td>판매업 주소</td><td colspan="2">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, 2층 (삼성동, 아이파크타워 2)</td></tr>
<tr><td>판매업 대표전화</td><td colspan="2">02-3484-57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유해화학물질 정보</td><td>물질명</td><td>Lead acetate</td></tr>
<tr><td>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(CAS No.)</td><td>301-04-2</td></tr>
<tr><td>용도</td><td>수질 분석용 시약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취급 기준 준수</td><td>취급시설</td><td>-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
- 취급시 보안경,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
-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 노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</td></tr>
<tr><td>화학사고 예방</td><td>-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눈이나 몸을 씻을 수 있는 세안시설과 샤워시설이 이용 가능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.
- 사용한 후 식사, 흡연, 화장실에 가기 전에 물과 비누로 손을 꼭 씻을 것.
- 취급 또는 작업 시는 통풍이 잘되는 후드에서 행하고 불 침투성 바닥, 독성 흄 응축장치, 분말제거장치를 갖출 것.
- 호흡보호구, 전면보호구, 내산성장갑, 고효율의 입자필터가 장착된 안면보호구, 보안경 (dust-proof goggle)을 반드시 사용할 것.
- 납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티아민 등을 사용할 수 있음.
- 오염된 작업복은 분리하여 세탁할 것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.</td></tr>
<tr><td>보관・저장</td><td>- 열원, 습기, 산, 산성 흄 또는 산화제와 격리하여 저장할 것.
-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밀폐보관 할 것.
-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.
- 과염소산염, 과산화물, 과망간산염, 염소산염, 질산염 등의 염산, 황산, 질산 등의 강산, 칼륨, 나트륨, 마그네슘, 아연 등의 화학적으로 활성인 금속과 격리하고 빛을 피해 저장할 것. (Lead acetate)</td></tr>
<tr><td>운반</td><td>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
-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.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-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
-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,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
-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
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</td></tr>
</table>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